

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 규정

제정 2002.03.01.

개정 2013.04.01.

개정 2015.04.1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,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자율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.
2.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 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- 가. 성적인 농담, 폭언,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
 - 나.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인사, 연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 - 다.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- 라.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3. “성폭력 범죄”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내·외를 불문하고 본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.

제4조(의무)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피해자 보호)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비밀유지의 의무) ①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② 피해자, 가해자 및 사건과 관련된 관여자는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사건 관련자의 신원 노출을 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2장 담당기관 및 업무

제1절 성평등상담실

제7조(설치)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사건의 처리를 위해 서울·국제 캠퍼스 내에 성평등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을 각각 둔다.

제8조(구성) ① 상담실을 대표하고 상담실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담실장을 두며, 상담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상담실장은 발령 이후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 등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요원, 행정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상담실의 전문상담요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성문제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성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 경험이 있는 자

④ 상담실의 운영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며 본교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·결산과정을 진행한다.

제9조(업무)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폭력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
3.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요청
4.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치료
5. 사건 상담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법률 및 의료 절차 안내
6.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

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

제10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(이하 “대책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성폭력 사건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조사위원회 구성
3. 가해자 징계 요구 및 필요한 조치
4. 본 규정 시행지침의 제·개정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1조(구성 및 임기) ① 대책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학생지원처장, 국제캠퍼스는 취업진로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, 성평등상담실장(국제: 학생생활상담팀장), 여학생과장, 총여학생회장 등 당연직 위원과 교원대표 1인, 직원대표 1인, 총여학생회 추천 1인, 총학생회 추천 1인,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추천 1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한 성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

원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외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.

- 1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
 - 2. 사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
 - 3.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
 - 4.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(학부)나 부서의 동료교수, 동료직원, 학생인 때
- ②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1.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
 - 2. 피신고인을 두둔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때
 - 3. 사건 당사자와 동일한 학과(학부)나 계열, 부서 소속 교수, 직원, 학생인 때

제13조(회의)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대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를 개최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- 2.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- 3.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
-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- ⑥ 간사는 대책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3절 조사위원회

제14조(설치 및 기능)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상담실장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.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조사위원회는 당해사건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산한다.

제15조(구성 및 임기)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상담실장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.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조사위원회는 당해사건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산한다.

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

제16조(신고) ①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상담실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고는 서면, 우편, 전화, 통신(e-mail 포함) 또는 상담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.

③ 상담실 이외의 본교 내 각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④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된 이후, 상담과정과 사건 처리 과정 중 피신고인의 자퇴·휴학·퇴학·사직·휴가·해임 등의 행위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.

제17조(처리절차)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상담실장은 피해자 · 가해자 또는 사건 관련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상담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

2.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

④ 상담실장은 조사위원회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, 성폭력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, 피신고인, 사건 관련자, 참고인 등을 면담 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.

⑤ 상담실장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, 구성 즉시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.

제18조(중재)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해결이 아닌 중재를 요청할 경우, 상담실장은 중재를 할 수 있다.

제4장 징계 및 조치

제19조(결정 및 처리) ① 대책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· 의결을 거쳐 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.

1. 교원 및 직원 : 교원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

2. 학생 :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처리

- ②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일 경우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③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· 봉사 · 배상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.
- ④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 가해자의 소속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.
- ⑤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 및 조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일주일 이내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가중조치 및 가중징계)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 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 발의 할 수 있다.

- 1.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
- 2. 가해자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
- 3. 피해자나 참고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
- 4.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

제5장 교육 및 예방조치

제21조(교육) 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대학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,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성폭력 관련 법령,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- 2.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- 3.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
- 4.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22조(예방조치) 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- 1. 상담창구 마련
- 2.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
- 3.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
- 4.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
- 5.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
- 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장 보칙

제23조(시행지침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4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의 적용은 규정 시행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신고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